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 건 택
(새누리당, 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신건택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지정취소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과 도매시장의 자율성 확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재지정 금지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시장과 공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